

급여 계약내용 (2016. 1. 1. 개정)

등급	총이용 일수	단가(원)	총급여	본인부담율	본인부담금 ①	총자부담 ①+②
1등급	31일 적용	57,040원	1,768,240원	일반(20%)	353,648원	617,148원
				경감(10%)	176,824원	440,324원
2등급	31일 적용	52,930원	1,640,830원	일반(20%)	328,166원	591,666원
				경감(10%)	164,083원	427,583원
3등급	31일 적용	48,810원	1,513,110원	일반(20%)	302,622원	566,122원
				경감(10%)	151,311원	414,811원

비급여 항목 계약내용

항목	기간	단가/일	개수/일수	금액②
식사재료비	1개월	2,500원X3식=7,500원	31일	232,500원
간식비	1개월	1,000원X1회=1,000원	31일	31,000원
영양식	1개월	2,500원X3회=7,500원	31일	232,500원
합 계 (일반식)			31일	263,500원
합 계 (영양식)			31일	232,500원

♣ 상기 금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고시공표로 조정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입소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도 수가 변경 안내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분류	등급	'15년 수가	'16년 수가 (1.72%인상)
노인요양시설	1	56,080	57,040
	2	52,040	52,930
	3	47,990	48,810

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한 달(31일 적용) 요양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(본인부담율 20%기준)

등급	기존 금액 (12/31까지)	변경 금액 (1/1부터)
1	611,196	617,148
2	586,148	591,666
3	561,038	566,122

1/1부터 위의 변경 금액으로 요양비가 청구될 예정이오니, (자세한 비용은 뒷장을 참고하세요)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(031-934-5700,5705)